

## 만 나이 통일 행정기본법 개정 관련 Q&A자료

Q1) '만 나이'에 대해 가장 쉽게 말한다면?

A1) '만 나이'는 햇수가 아니라,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도래해 만 1년이 되면 1살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계산함.

예) 2023. 1. 1.을 기준으로 손흥민 선수(1992. 7. 8. 생)는 ① 만 나이로 30세, ② 세는 나이로 32세, ③ 연 나이로 31세이나, '만 나이 통일'이 되면 "30세"로 통용하게 됨.

Q2-1) 법령에서 “60세”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나이는 ‘만 나이’인지, ‘세는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A2-1) ‘만 나이 통일법’에서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했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상 나이는 당연히 ‘만 나이’(만 60세)를 의미함.

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 모두 ‘만 나이’ 의미

Q2-2) ‘연 나이’를 규정한 법령 사례는?

A2-2) ‘연 나이’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을 두어 만 나이와 구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청소년보호법, 병역법** 등이 있음.  
(보도자료 붙임 참고)

※ 연 나이 규정 법령 대표 사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②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Q3) ‘만 나이법’ 개정을 추진한 이유는?

A3)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만 나이’ 사용을 일상화하여, 그동안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다양한 나이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개정하여 ‘만 나이’ 계산과 표시 원칙을 직접 명문화한 것이며,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①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한다는 점과 ② 공문서상 나이를 ‘만 나이’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국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명시한 것임.

※ 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연령인 “56세”의 의미에 대해 원심은 「민법」등 법령상 연령은 별도로 “만”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여 “만 56세”라고 해석했으나, 대법원에서는 단체협약 체결 동기(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및 노조위원장의 공고문 내용 등의 정황을 고려해 “만 55세”라고 해석함(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두31832 판결) - [나이기준 해석을 둘러싼 법적분쟁이 장기 지속된 사례](#)

Q4) ‘만 나이법’이 개정·시행되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A4)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과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져
- 아래 예시와 같이,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계약서나 법령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가 ‘세는 나이’인지 또는 ‘만 나이’인지를 다투는 분쟁·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당연히 ‘만 나이’로 해석)

#### ‘만 나이 통일’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사례 예시

##### 사례 1 나이에 따른 상비약 용법·용량(예: “12세 미만 20ml”) 혼동 해소

**기존** 어린이 감기약 섭취기준이 “12세 미만 20ml”와 같이 표시된 경우, 국민의 건강·안전에 직결되는 의약품의 연령별 용법·용량(‘만 나이’ 기준)을 ‘세는 나이’로 혼동, 정량을 초과해 과다 복용할 우려

**개선** ‘만 나이’ 기준 나이 표시가 정착되면 의약품 용법·용량에 대한 혼동 해소

##### 사례 2 버스요금 무료인 동반아동 나이 관련 혼선 해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제6항)

**기존** 6세 미만(‘만 나이’ 기준) 동반아동은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운임(버스요금)이 무료이나, 나이 기준을 ‘세는 나이’ 또는 ‘연 나이’로 잘못 알아 버스요금을 지불한 후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경기버스 ‘자주 묻는 질문(FAQ)’ 및 ‘불편사항’ 게시판 등 참조)

**개선** ‘만 나이’ 기준이 정착되면 일상생활에서 나이로 인한 민원·혼선 최소화

##### 사례 3 사회복지 정책, 출산 등 행정현장의 각종 혼란 해소(2월, 경기 평택시 대정부·국회 건의사항)

**기존** 경기 평택시는 “직원 채용·퇴직, 사회복지 정책 등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지만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오해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과의 관계에서 정보 전달의 혼선과 12월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연령 계산 방식을 ‘만 나이’로 일원화해줄 것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건의(2.23. 뉴시스 “당신 나이는 몇 살?”, 평택시, 나이 계산 기준 일원화 건의” 보도)

**개선** 지자체 등 일선 행정 현장에서 나이 기준으로 인한 정책집행상 혼란 해소 기대

Q5) ‘만 나이’의 사회적 정착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A5)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만 나이’ 사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2023년부터는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들에 대한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조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비 대상 법령을 선정하고, 정비방안·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만 나이’로 정비를 해나갈 계획이다.

※ 여론조사로 보는 ‘만 나이’에 대한 인식변화 추이

2016. 2. 리얼미터 (총 529명 참여)	“만 나이 통일이 바람직” 44% “한국식 나이 유지가 바람직” 46.8%
2021. 12. 한국리서치 (총 1,000명 참여)	“한국식 나이 폐지, 만 나이 공식화 찬성” 71% “한국식 나이 유지, 만 나이 공식화 반대” 15%
2021. 12. 뉴닉 (총 2,021명 참여)	“만 나이 표준화 찬성” 83.4% “만 나이 표준화 반대” 12.8%
2022. 1. SBS (총 995명 참여)	“만 나이 정착 찬성” 91% “만 나이 정착 반대” 6%
2022. 9. 법제처 (총 6,394명 참여)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 사용하겠다” 86.2%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나이 사용하겠다” 10.5%

Q6) 현재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들은 모두 정비되는 것인지?

A6) 모든 '연 나이' 규정 법령을 무조건 만 나이로 고치겠다기보다는,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만 나이'로 개정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를 만 나이로 통일해 나갈 예정임.

-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연 나이'로 규정된 법령이 60 여개 정도가 있음.
- 다만 개별 법령에서 '연 나이'가 규정된 것은 특별한 입법정책적 고려에 따라 국민 편의적 측면이나 행정적 필요에 따른 것 등 그 규정 취지나 목적이 다양하므로, '만 나이'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연구용역, 국민 의견조사와 소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각 개별 법령의 정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Q7) 국민연금 수령기간, 노령연금 지급 시기, 공무원 또는 민간 정년, 65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연령 등의 기준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A7) 위에서 언급한 사항과 관련된 나이 기준은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은 없음.

※ 이 부분은 '만 나이법' 개정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 아님.

Q6) 현재 동갑내기 친구나 학교 동급생 간에 나이가 달라지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출생연도는 같지만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음.
-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앞으로 '만 나이' 기준이 일상생활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동급생끼리 친구로 어울리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면, 기존 동갑내기 문화와 나이에 따른 엄격한 서열문화도 점차 변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 또한 중요한 입법 취지 중 하나임.